

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안내

* 근거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(급여) 후단[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(사망조위금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]

1. 지급요건

사망자	수급권자	수급권자 순위
교직원의 - 배우자 -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- 자녀	교직원	1.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.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.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.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※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☞ 부양사실 증빙은 '주민등록표 등본' 제출(제401호 서식)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'제출로도 가능함

사망자	수급권자	수급권자 순위
교직원 본인	배우자 또는 장제자	1.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2.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1)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)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)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※ 위 순위에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지급

2. 청구인 유의사항

- 본 사망조위금은 **사망신고 후 그 사실이 확정된 다음(약 2주 소요)**에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공통서류 : 망인 기준 **'기본증명서'**(**'사망진단서'** 불가)
 -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 사망 : 청구인 기준 **'가족관계증명서'**
 -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 : 배우자 기준 **'가족관계증명서'**, **'혼인관계증명서'**
- 제출자료는 사진 촬영(JPG파일)해서는 안되며, 반드시 원부를 스캔하여 **PDF 화일로 첨부**해야 합니다.(반송 사유)
- 발급자료는 **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확인**되도록 해야 합니다.(특정' 발급가능)
- 본 사망조위금은 **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**되는 급여입니다. 따라서, 가족 중에 사학연금 법 적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된 급여가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☞ 특이사례는 인터넷 청구 불가(제205호 서식 이용 우편 접수)

- ① 교직원의 **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부모 사망**의 경우
- ② 교직원 또는 배우자의 친생부모가 **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**
→ 홈페이지 내 '친생부모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기준' 참고
- ③ **청구자 또는 사망자가 외국인 또는 국적 상실자**의 경우는 해당 국가 발행 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

3. 청구절차

▶ 「홈페이지 사망조위금」 청구 및 첨부서류

※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첨부

제출서류	
공통서류	사망자 기준 '기본증명서'(사망신고 및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
추가 서류	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사망 청구인 기준 '가족관계증명서'(사망신고 및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
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	배우자 기준 '가족관계증명서'(사망신고 후 '사망' 표기 확인 후 발급), '혼인관계증명서'

※ 각 증명서 발급 방법 :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

4. 홈페이지 이용 및 청구 방법

홈페이지(www.tp.or.kr) / 재직교직원 / 사망조위금 청구(공동인증서 로그인)

- 1) 청구인 정보 등록
- 2) 사망인 정보 등록
- 3) 관련 서류는 구분에 맞게 [반드시 PDF화일](#)로 저장 또는 [스캔하여 업로드\(사진촬영 JPG 등 화일 금지\)](#)

※ 본 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205호 서식(본 홈페이지 / 소식·자료 / 연금자료 / 서식자료실) 작성, 제출 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